

의 안 번호	2431	<b>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2.(목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성 총괄 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E=A+D
	계 D=B-C	조 성 액(B)	사 용 액(C)	
868,921,053	285,215,560	509,928,350	224,712,790	1,154,136,613

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

### 5. 검토의견

- 기금 지출결산에서 세부사업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, 재료비(206-01)의 지출 계획액은 25,000천원이나 지출액은 없음. 지출계획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- 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